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 분양광고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entreville-lamer.com)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입주자분양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1577-4465)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3.22)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3.19.로 광고일과 다름)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3.19)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 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3월 29일(월)	4월 1일(목) 16:00시 이후	4월 2일(금)~4월 3일(토)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5번지) (도로명주소: 구월남로 129)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분양신고번호:2021-건축과-분양신고-1(2021.03.19.)]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남동구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건축허가번호 :2017-건축과-신축허가-110(2017.05.23.)]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1번지 외 2필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소래지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3,945㎡(오피스텔 : 3,404.038㎡, 근린생활시설 : 540.962㎡)
- 건축물 연면적 : 54,962.2397㎡(오피스텔 : 49,319.3354㎡, 근린생활시설 : 5,642.8843㎡)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6층 ~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오피스텔(지상 3층 ~ 지상 23층, 630실),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 지상 2층, 59호)
- 공급규모 : 지하 6층 ~ 지상 23층 1개동 중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총 630실
- 주차대수 : 666대(자주식 492대, 기계식 174대) 중 630대

■ 내진설계 등급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c	1.20	C	중요도(1)	RX=4.00, RY=4.0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6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 준공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사업자(시행수탁자) : 아시아신탁(주) ■ 시공사 : 동부건설(주) ■ 시행위탁자 : (주)에스디디벨롭먼트 ■ 분양대행사 : 지우알엔씨(주)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신탁업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임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타입별 모집의 경우)

(단위 : ㎡)

군	타입	공급호실(수)		건축물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1군	23	20	336	23.8301	12.4112	1.5928	20.4134	58.2475	3.9730
	23T	1		23.8301	12.4112	1.5928	20.4134	58.2475	3.9730
	27	313		27.5301	13.7570	1.8401	23.5830	66.7102	4.5899
	27T	2		27.5301	13.7570	1.8401	23.5830	66.7102	4.5899
2군	36	220	231	36.4359	17.5923	2.4354	31.2119	87.6754	6.0747
	36T	11		36.4359	17.5923	2.4354	31.2119	87.6754	6.0747
3군	44	60	63	44.8941	22.0513	3.0007	38.4574	108.4035	7.4848
	44T	3		44.8941	22.0513	3.0007	38.4574	108.4035	7.4848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3.19.로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단위 : 실)

군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 (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호실	
1군	23	20	336	67	269	※ 주민등록등본 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분양신고일 2021.03.19.기준) ※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각 군별 타입,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배정
	23T	1				
	27	313				
	27T	2				
2군	36	220	231	46	185	
	36T	11				
3군	44	60	63	12	51	
	44T	3				

■ 공통사항

- 본 분양대상 오피스텔 630실은 3개군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http://www.centreville-lamer.com)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분양금액은 타입,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되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넷째자리로 정리하였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은 630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1층 ~지하 6층	지하 주차장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 부대시설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
지상 3층 ~ 23층	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금액 및 납입일정

(단위 : 원 / VAT포함)

군	타입	호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5일이내	1회(10%) 2021.06.30	2회(10%) 2021.11.30	3회(10%) 2022.04.30	4회(10%) 2022.09.30	5회(10%) 2023.02.28	6회(10%) 2023.07.31	입주시
1군	23	22	1	4	33,580,000	86,410,000	8,640,000	128,630,000	5,000,000	7,863,000	12,863,000	12,863,000	12,863,000	12,863,000	12,863,000	12,863,000	38,589,000
			1	5	34,980,000	90,010,000	9,000,000	133,990,000	5,000,000	8,399,000	13,399,000	13,399,000	13,399,000	13,399,000	13,399,000	13,399,000	40,197,000
			4	6~9	36,380,000	93,610,000	9,360,000	139,350,000	5,000,000	8,935,000	13,935,000	13,935,000	13,935,000	13,935,000	13,935,000	13,935,000	41,805,000
			6	10~15	37,780,000	97,210,000	9,720,000	144,710,000	5,000,000	9,471,000	14,471,000	14,471,000	14,471,000	14,471,000	14,471,000	14,471,000	43,413,000
			5	16~20	38,340,000	98,650,000	9,860,000	146,850,000	5,000,000	9,685,000	14,685,000	14,685,000	14,685,000	14,685,000	14,685,000	14,685,000	44,055,000
			3	21~23	39,040,000	100,450,000	10,040,000	149,530,000	5,000,000	9,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44,859,000
	23T	22	1	3	39,040,000	100,450,000	10,040,000	149,530,000	5,000,000	9,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14,953,000	44,859,000
	27	15~21, 23~30	13	3	39,130,000	100,660,000	10,060,000	149,850,000	5,000,000	9,985,000	14,985,000	14,985,000	14,985,000	14,985,000	14,985,000	14,985,000	44,955,000
			15	4	41,240,000	106,100,000	10,610,000	157,950,000	5,000,000	10,795,000	15,795,000	15,795,000	15,795,000	15,795,000	15,795,000	15,795,000	47,385,000
			15	5	41,800,000	107,540,000	10,750,000	160,090,000	5,000,000	11,009,000	16,009,000	16,009,000	16,009,000	16,009,000	16,009,000	16,009,000	48,027,000
			60	6~9	42,360,000	108,980,000	10,890,000	162,230,000	5,000,000	11,223,000	16,223,000	16,223,000	16,223,000	16,223,000	16,223,000	16,223,000	48,669,000
			90	10~15	42,880,000	110,310,000	11,030,000	164,220,000	5,000,000	11,422,000	16,422,000	16,422,000	16,422,000	16,422,000	16,422,000	16,422,000	49,266,000
			75	16~20	43,380,000	111,610,000	11,160,000	166,150,000	5,000,000	11,615,000	16,615,000	16,615,000	16,615,000	16,615,000	16,615,000	16,615,000	49,845,000
			45	21~23	43,940,000	113,050,000	11,300,000	168,290,000	5,000,000	11,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50,487,000
	27T	23, 24	2	3	43,940,000	113,050,000	11,300,000	168,290,000	5,000,000	11,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16,829,000	50,487,000
2군	36	2~6	5	4	54,350,000	139,840,000	13,980,000	208,170,000	10,000,000	10,817,000	20,817,000	20,817,000	20,817,000	20,817,000	20,817,000	20,817,000	62,451,000
			5	5	57,910,000	148,980,000	14,890,000	221,780,000	10,000,000	12,178,000	22,178,000	22,178,000	22,178,000	22,178,000	22,178,000	22,178,000	66,534,000
			20	6~9	59,810,000	153,880,000	15,380,000	229,070,000	10,000,000	12,907,000	22,907,000	22,907,000	22,907,000	22,907,000	22,907,000	22,907,000	68,721,000
			30	10~15	61,180,000	157,410,000	15,740,000	234,330,000	10,000,000	13,433,000	23,433,000	23,433,000	23,433,000	23,433,000	23,433,000	23,433,000	70,299,000
			25	16~20	62,720,000	161,370,000	16,130,000	240,220,000	10,000,000	14,022,000	24,022,000	24,022,000	24,022,000	24,022,000	24,022,000	24,022,000	72,066,000
			15	21~23	63,360,000	163,030,000	16,300,000	242,690,000	10,000,000	14,269,000	24,269,000	24,269,000	24,269,000	24,269,000	24,269,000	24,269,000	72,807,000

		8~13	6	4	53,620,000	137,970,000	13,790,000	205,380,000	10,000,000	10,538,000	20,538,000	20,538,000	20,538,000	20,538,000	20,538,000	20,538,000	61,614,000
			6	5	57,430,000	147,760,000	14,770,000	219,960,000	10,000,000	11,996,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65,988,000
			24	6~9	59,310,000	152,580,000	15,250,000	227,140,000	10,000,000	12,714,000	22,714,000	22,714,000	22,714,000	22,714,000	22,714,000	22,714,000	68,142,000
			36	10~15	60,680,000	156,110,000	15,610,000	232,400,000	10,000,000	1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69,720,000
			30	16~20	62,190,000	160,000,000	16,000,000	238,190,000	10,000,000	13,819,000	23,819,000	23,819,000	23,819,000	23,819,000	23,819,000	23,819,000	71,457,000
			18	21~23	62,440,000	160,650,000	16,060,000	239,150,000	10,000,000	13,915,000	23,915,000	23,915,000	23,915,000	23,915,000	23,915,000	23,915,000	71,745,000
	36T	2~6	5	3	67,170,000	172,820,000	17,280,000	257,270,000	10,000,000	1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77,181,000
		8~13	6	3	67,170,000	172,820,000	17,280,000	257,270,000	10,000,000	1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25,727,000	77,181,000
3군	44	1, 7	2	4	67,590,000	173,900,000	17,390,000	258,880,000	10,000,000	15,888,000	25,888,000	25,888,000	25,888,000	25,888,000	25,888,000	25,888,000	77,664,000
			2	5	70,390,000	181,100,000	18,110,000	269,600,000	10,000,000	1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80,880,000
			8	6~9	74,840,000	192,550,000	19,250,000	286,640,000	10,000,000	18,664,000	28,664,000	28,664,000	28,664,000	28,664,000	28,664,000	28,664,000	85,992,000
			12	10~15	75,710,000	194,780,000	19,470,000	289,960,000	10,000,000	18,996,000	28,996,000	28,996,000	28,996,000	28,996,000	28,996,000	28,996,000	86,988,000
			10	16~20	76,630,000	197,160,000	19,710,000	293,500,000	10,000,000	19,350,000	29,350,000	29,350,000	29,350,000	29,350,000	29,350,000	29,350,000	88,050,000
			6	21~23	77,300,000	198,890,000	19,880,000	296,070,000	10,000,000	1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88,821,000
		14	1	4	67,030,000	172,460,000	17,240,000	256,730,000	10,000,000	1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77,019,000
			1	5	69,830,000	179,660,000	17,960,000	267,450,000	10,000,000	16,745,000	26,745,000	26,745,000	26,745,000	26,745,000	26,745,000	26,745,000	80,235,000
			4	6~9	74,110,000	190,680,000	19,060,000	283,850,000	10,000,000	18,385,000	28,385,000	28,385,000	28,385,000	28,385,000	28,385,000	28,385,000	85,155,000
			6	10~15	74,950,000	192,840,000	19,280,000	287,070,000	10,000,000	18,707,000	28,707,000	28,707,000	28,707,000	28,707,000	28,707,000	28,707,000	86,121,000
			5	16~20	75,880,000	195,210,000	19,520,000	290,610,000	10,000,000	19,061,000	29,061,000	29,061,000	29,061,000	29,061,000	29,061,000	29,061,000	87,183,000
			3	21~23	76,550,000	196,940,000	19,690,000	293,180,000	10,000,000	1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87,954,000
	44T	1, 7	2	3	77,300,000	198,890,000	19,880,000	296,070,000	10,000,000	1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29,607,000	88,821,000
		14	1	3	76,550,000	196,940,000	19,690,000	293,180,000	10,000,000	1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29,318,000	87,954,000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이하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03.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군으로 접수하며, 타입/층/호는 신청 군 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3월 29일(월)	4월 1일(목) 16:00시 이후	4월 2일(금)~4월 3일(토)(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타입)별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5번지) (도로명주소: 구월남로 129)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전에 사용할 네이버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네이버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청약전 반드시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 발급을 받으시고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농협은행 전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농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3.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4월 1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타입(군)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4월 2일(금)~2021년 4월 3일(토)	10:00~16:00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5번지) (도로명주소: 구월남로 129)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오피스텔)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MG새마을금고	9002-1951-3509-2	아시아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진행할 수 있으나, 알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계약자 인감도장 5.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법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3.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수탁자로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 계약금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 내 견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공지 예정(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며,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시행위탁자는 총 분양가격의 60%범위 내 대출을 알선합니다. (단, 정부의 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알선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출금융기관이 미확보된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은 시행위탁자가 통보하는 일자에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연체 시 연체료 발생함)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중도금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 또는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대출가능 금융기관간 대출업무협약이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초과, 중복 초과등)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조건(금융기관, 금리 등)에 이의가 있는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IV 선택품목 안내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품목	공급금액	비고
27	침실분리형 (3연동슬라이딩도어)	1,300,000	-
27T			
36	거실, 주방바닥 포세린타일	650,000	미선택시 강마루 시공됨
36T			
44	거실, 주방바닥 포세린타일	700,000	미선택시 강마루 시공됨
44T			

■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입금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NH농협은행	317-0022-2864-21	동부건설(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추가선택 품목의 계약금, 잔금 금액 및 납부 시기는 계약 체결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선택품목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 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및 양수인이 책임진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건축물은 시행위탁자 ㈜에스디디벨롭먼트,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시공사 동부건설㈜ 간 체결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공급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에스디디벨롭먼트가 시행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에스디디벨롭먼트이고, 아시아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수분양자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시행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행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상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에게 있다.
-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 시공예정인 제품 및 마감은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대지면적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대지면적 증감에 따른 대지비 상호 정산은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직접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외부 간판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상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공급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 총 부채상황비율(DTI) 등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중도금 납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입주 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에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호실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일부 가전제품 외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공기청정 등의 추가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오며, 견본주택내에 설치된 냉난방 에어컨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물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장비와 전열교환기의 장비의 위치는 시공시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 장비는 목업용 장비이며, 시공시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 시공 여건, 성능, 기능, 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유리 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기, 수전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호실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권리를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에 위탁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2017.05.23.)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간판 등의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손해배상 계약해지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호실은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현재 당 사업지대지경계 밖에 조성된 차도 및 보행로는 당 사업지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상도로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 시 인접 주변도로는 변경 또는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 시에는 도로의 레벨, 폭, 방향 등이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침에 의하여 도로, 공공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또는 기타 건물 배치 등은 향후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주변도로 단지 외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호실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개별 진행 중 및 개별예정으로 분양시점에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 등의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공용시설(기계실, 주차장 등)면적은 각 호실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호실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1대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 실외기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의 유지보수에 따라 개별 호실 에어컨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착수 후 현장여건(지질상태, 주변민원 등)에 따라 토목공사 및 지정 공법이 사업승인도서와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외기는 옥상층에 공동으로 설치되며, 이를 차폐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실외기로 인해 옥상 산책로 이용 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여 통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단지 내·외부의 조경계획 (공공공지, 공개공지, 식재, 포장, 데크, 휴게시설, 운동시설, 옥상조경), 각종 시설물 계획 (웰컴라운지, 피트니스, DA, 차량차단기, 주차램프시설, 자전거보관소, 장애인 램프 및 난간, 장애인 전용 통로, 캐노피, 실외기 보관소(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BI 및 내·외부 사인물, 옥외광고물, 미술장식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도로, 고속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에 인접한 호실은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동등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예정이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 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가능 합니다.(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호실이 속한 호실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주차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를 바로 잡고,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물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르므로 분양받은자의 책임하에 사전확인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공급 호실은 관련법 등에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호실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지외부, 기타건축물 등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바랍니다.
- 본 건축물 외관에 시공되는 당사 브랜드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분양사업자에게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매립의 경우 타입별로 높이와 구조에 의해 위치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층 출입이 가능하며, 2.3~2.5m 차량은 지하1층 분리수거장 위치까지 출입 가능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행자도로, 동 출입구 등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공 보도입니다.
-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될 수도 있으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1~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인근 상업시설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으로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광고의 주체는 아시아신탁㈜ 와 ㈜에스디디벨롭먼트이며 광고, 분양영업 등 모집절차는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관련 없습니다.
-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은 정확한 일정을 지정하여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견본주택 /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건축허가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당 견본주택 전시 호실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 호실,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옵션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호실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함,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

		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데크 계단 디자인, 상부 지붕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시설, 포장 등)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 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폐기물 보관소 인접 호실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로비,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 호실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 미술품(동 출입구 앞 공용공간, 1층 롭 등)이 설치되며, 추후 미술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주변도로나 철도와 인접한 호실은 차량이나 기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덕트는 외부로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호실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1층에 폐기물 보관소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되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로비, 커뮤니티, 3층 조경, 아트리움, 옥상 라운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이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호실은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당현장은 현장여건상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됨. • 드라이에어리어(D.A) 부근 근린생활시설의 창호 크기는 타 기본타입 호실과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오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BI, 옥외광고물, 옥외사인물,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3면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지 동측에 약 8m도로(공공공지 포함), 북측에 약 15m도로, 서측에 약 12m도로가 접하고 있어 일부 소음 및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2F)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호실은 가로등, 기타 유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광고판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근 단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에 공개공지가 설치 될 예정이며, 공공장소 활용으로서 이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그 외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3층 조경공간 및 아트리움, 옥상라운지로 인해 인접 호실은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라운지 설치로 고층부 호실은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층 일부 호실 완충공간인 테라스를 "세이프티존(Safety Zone)"으로 가칭하였으며, 각각의 세이프티존은 3층 호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한 전면공간입니다. 또한 세이프티존은 3층의 모든 호실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해당 여부는 모형 및 CG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따른 일체의 민원 및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 "세이프티존"에 설치되는 캐노피, 바닥재, 칸막이벽, 난간등의 색채, 크기, 재료 등은 향후 시공 및 인허가 과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이프티존"은 3층 조경공간과 맞닿아 있어, 조경공간을 이용하는 입주자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원 및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 "세이프티존" 전면에 계획된 조경 식재 및 휴게시설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건물외벽 일부 구간은 커튼월룩이 설치되며, 시공시 각 호실별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환기 그릴 또는 마감캡 등으로 인해 커튼월룩 입면의 모양, 유리 및 프레임의 크기, 재료, 성능, 색상 등은 향후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모형,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의 각종 광고홍보물에 제시된 건물 외벽 및 돌출 프레임은 각 호실별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환기 그릴 또는 마감캡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3층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옥외난간의 색채, 크기, 재료등은 향후 시공 및 인허가 과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 각 호실의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동 외부마감의 디자인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로비 내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건축물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각 호실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석재뿜칠,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건축물의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옥상에는 기간사업자 안테나,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가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부분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호실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입면 몰딩(또는 돌출슬라브)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길이, 형태 및 재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 • 주동 하부 피트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오픈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건축물 주차 관련 주차대수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 산정되었으나,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단 구성 후 관련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함 • 본 건축물 주차대수는 총 666대(자주식 492대, 기계식 174대)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지하5층~지하6층에 평면왕복식 기계식 주차장으로 시공되며, 기계식 주차장의 입구는 지하5층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센트레빌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최초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주차규격은 예전 주차장법에 따라 경형(폭 2.0M), 일반형(폭 2.3M), 확장형(폭 2.5M)로 설치되며, 설계 변경에 따른 일부 주차폭이 축소 될 수 있음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본 분양목적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로 주차장은 용도별로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계획주차대수로 산정하였으며 주차구획은 별도 분리하지 않아 주차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함.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시공됨. • 구조 형식 상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공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일부는 비상 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되어 사용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에 의해 인, 허가 및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공유시설로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는 계약자 및 입주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주차장의 점포별 분할면적이나 위치 지정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단위세대	**공통**	• 호실 내부 및 호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외 붙박이장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틈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호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호실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호실의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호실은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호실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침실 붙박이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2층 부대복리시설 상부층 호실은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 각 호실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음 • 본 공사 시 TV는 벽부형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 스탠드형으로 제공되고, TV크기 및 사양(제조사 포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 제공 및 설치되는 무상 빌트인 제품(냉장고, 전기쿡탑, 후드, 음식물탈수기, 세탁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의 제품사양 및 제조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상 빌트인 LG전자 제품(냉장고, 세탁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에 적용되는 IoT서비스(LG ThinQ Home)는 단지 네트워크망의 여건 등에 따라 사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성능개선 및 LG전자의 정책 등에 따라 종료될 수 있고, 이는 시공사와 무관함. - LG전자의 IoT서비스(LG ThinQ Home)는 3년간 무상제공(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될 예정이며, 3년 후 유상 전환되오니,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및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은 필히 제공업체인 LG전자에 확인하시기 바람. • 각 호실에 별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TV, 쇼파, 테이블 제품은 시행위탁자가 제공하는 품목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 27타입 주방 빌트인 냉장고장이 설치된 붙박이장 주방가구는 시행위탁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품목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 27타입에 제공되는 인출식 식탁은 사용중의 오염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자재	• 각 호실의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타일시공부분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의 타일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으며 걸레받이는 시공되지 않음. • 주방상판 마감은 자재 특성상 패턴이 다소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접합부는 이음라인이 생길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인조강화석 젠다이의 중간에 이음라인이 생길 수 있음.
	창호	• 호실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하드웨어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는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호실 내부측 창호부분는 비닐쉬트로 마감되고 접합부는 이음라인이 생길 수 있으며 외부측은 외부색채,마감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호실 현관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호실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건축물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승인도 서(변경포함)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건축물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건축물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배연창은 각 타입 거실에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배연창의 개폐 형태 및 열림 방향, 창호 개폐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배연창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인해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실 현관문의 폭은 구조 계획상 공동주택(일반주거용 아파트) 현관문보다 작을 수 있음.
	기계 / 전기 / 설비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주방 렌지후드에는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소화설비가 설치됨. • 주방 조명기구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호실 내 전기분전반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제171 조 에 의거하여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환기창 D.A 등이 건물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호실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냄새,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저층부 주변에 제연 휀룸 환기창이 설치 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호, 실은 근린생활시설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속도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 입점되는 업태에 따라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상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호실에 일괄로 천정형에어컨(냉방전용)이 설치 시공되며 23타입, 27타입은 거실 1개소(슬라이딩도어 유상옵션 선택시 침실 위치임)에 36타입, 44타입은 거실과 침실 각각 1개소(44타입 침실2 제외)에 설치 시공되며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실내 냉방기기(천정형시스템에어컨)는 기본으로 제공 및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설치할 수 없음. • 호실 천정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별 PD(기계 설비 관련 배관 등)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세대 내 설치 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 온도조절기 등의 설비의 설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주택용 소방 설비로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실 공사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 시공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VAT 포함)

구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기계 감리
회사명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941,6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0111 – 3543801
시공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역삼동)	110111-0005002
시행위탁자(사업주체)	에스디디벨롭먼트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11, 2층 203호(와동동, 덕진프라자)	284911-0213858
분양대행사	지우알엔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934호(송도동,송도건원테크노큐브)	180111-0652867

※ 분양대행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61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5번지(도로명주소: 구월남로 129) / 연락처 : 1577-4465 / 홈페이지 : www.centreville-lamer.com/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